

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비교 : 공직선거법과 규칙 분석

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, 건국대학교 교수 황도수

공직선거법

< 당일 투표 >

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)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·운전면허증·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. 이하 “신분증명서”라 한다)을 제시하고 **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**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8.>

**** 선거인이 날인 무인한 선거인 명부가 오프라인 증거자료로 남아 있다.**

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**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** 교부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1998. 4. 30., 2004. 3. 12., 2005. 8. 4.>

****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이 있으므로, 투표절차 과정에서 사인 날인을 위조할 가능성이 축소된다. 투표관리인의 사인이 증거자료로 남아 있다.**

**** 일련번호지가 별도로 수집되므로, 일련번호지가 오프라인 증거자료로 남아 있다.**

③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5. 8. 4.>

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)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 <개정 2002. 3. 7., 2004. 3. 12., 2005. 8. 4.>

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

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(초등학교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)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,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0. 2. 16., 2004. 3. 12.>

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.

⑧투표용지의 날인·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5. 8. 4.>

[제목개정 2011. 7. 28.]

**** 당일 투표는 1. 선거인 명부, 2. 투표관리인의 사인, 3. 일련번호지라는 3종의 오프라인 증거자료가 완벽하게 남아 있다. 그리고 4. 투표 상황을 기록한 투표관리인의 투표록이 남아 있다.**

< 사전투표 >

제146조의2(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) 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, **사전투표소마다**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.

②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,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

③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,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**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(이하 “사전투표기간”이라 한다)** 관할구역(선거구가 해당 구·시·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)의 읍·면·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4., 2022. 1. 21., 2022. 2. 16.>

1. 읍·면·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
2. 읍·면·동이 설치·폐지·분할·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·면·동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
3. 읍·면·동 관할구역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
4. 천재지변 또는 전쟁·폭동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
②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·소재지 및 설치·운영기간을 공고하고,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.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·사용협조, 설비,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,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4. 2. 13., 2018. 4. 6.>

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**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, 정보의 불법 유출·위조·변조·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** <신설 2015. 12. 24., 2021. 3. 26.>

**** 온라인 정보 보호는 그 본질상 완벽할 수 없다.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.**

**** 그런데, 법률은 정보 보호 문제를 모두 ‘기술적 보호조치’라는 단어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. 한심한 생각이다.**

****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,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. 오프라인 증거가 ‘최종적, 결정적’ 증거이어야 한다.**

⑥ 사전투표소의 설치·공고·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2. 24.>

[전문개정 2014. 1. 17.]

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, 이를 송부받은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**투표용지를 봉함하여**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8. 4.>

②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04. 3. 12.>

③사전투표소의 투표함(이하 “사전투표함”이라 한다)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(이하 “郵便投票函”이라 한다)은 따로 작성하되,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·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. <개정 2014. 1. 17.>

④**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**

⑤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·납품 및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,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·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**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**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5. 8. 4.>

⑥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**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**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**일련번호는 바코드(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)의 형태로** 표시하여야 하며, 바코드에는 선거명, 선거구명,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**일련번호**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4. 1. 17., 2021. 3. 26.>

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,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15. 8. 13.>

⑧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·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8. 13.>

⑨**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·보관·인계 그 밖에 필**

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05. 8. 4., 2015. 8. 13.>

[제목개정 2015. 8. 13.]

제155조(투표시간)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(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)에 닫는다. 다만,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. <개정 2004. 3. 12.>

②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,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12. 10. 2., 2014. 1. 17., 2014. 2. 13., 2022. 4. 20.>

③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,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8. 4.>

④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,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8. 4., 2010. 1. 25., 2014. 1. 17.>

⑤사전투표·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(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)까지 관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. <개정 2004. 3. 12., 2014. 1. 17.>

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(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)에 열고 오후 7시 30분(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)에 닫으며, 사전투표소(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. 다만,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·장애인·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(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오후 8시)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2. 16., 2022. 4. 20., 2023. 3. 29.>

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, 제176조제4항, 제218조의16 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“선거일 오후 6시”는 각각 “선거일 오후 7시 30분”으로, “오후 8시”는 각각 “오후 9시 30분”으로 본다. <신설 2022. 2. 16., 2023. 3. 29.>

[2012. 10. 2. 법률 제11485호에 의하여 2012. 2. 23.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]

제158조(사전투표) ① 선거인(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)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.

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.>

**** 오프라인 증거자료의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.**

이처럼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, 선거관리규칙은 오프라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정립해야 한다.

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“사전투표관리관”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.

**** 오프라인 증거자료의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.**

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)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

**** 일련번호가 같이 들어 있다. 누가 얼마나 투표했는지에 대해서 오프라인 증거자료가 없다.**

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14. 2. 13., 2021. 3. 26.>

1.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.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,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.

**** 우편 과정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통째로 교체해도 오프라인 증거로 이를 입증할 수 없다. 왜냐하면, 일련번호,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없음, 투표용지가 함께 회송용 봉투에 들어간 상태인데, 이 봉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입증할 오프라인 증거가 전혀 없다.**

2.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.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.

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 1. 17.]

제162조(사전투표참관)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,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. 17., 2021. 3. 26.>

② 정당·후보자·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17.>

③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. <개정 2005. 8. 4., 2014. 1. 17.>

④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”는 “관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”로, “투표관리관”은 “사전투표관리관”으로, “투표참관인”은 “사전투표참관인”

으로 본다. <개정 2000. 2. 16., 2005. 8. 4., 2010. 1. 25., 2014. 1. 17., 2015. 8. 13.>

⑤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. 17.>

[제목개정 2014. 1. 17.]

공직선거관리규칙

제71조(투표용지) 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(투표용지의 정당·후보자의 게재순위등)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·시·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 11. 14., 2002. 3. 21.>

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(가)에 의하여 작성한다. 이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, 법 제150조 제4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, 정당명,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8. 4. 30., 2000. 2. 16., 2002. 3. 21., 2005. 8. 4., 2010. 1. 25., 2015. 8. 13.>

③ 제2항의 투표용지에 「정당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정당 명칭의 약칭을 게재하려는 정당의 중앙당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약칭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5. 30.>

④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법 제1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정당 추천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해당 정당이 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(다)에 의한 후보자추천서에 그 순위를 게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25., 2019. 5. 30.>

⑤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·시·군 위원회는 2개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1995. 4. 14., 2002. 3. 21., 2019. 5. 30.>

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(나)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,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,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8. 4., 2019. 5. 30.>

⑦ 후보자가 사퇴·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(이하 이 항에서 “사퇴등”이라 한다)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의 인쇄 및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개정 2014. 1. 17., 2014. 2. 13., 2019. 5. 30.>

1. 인쇄소에서 작성하는 투표용지

가. 사퇴등의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(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추가 등록신청기간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 : 투표용지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“사퇴”·“사망” 또는 “등록무효”라고 인쇄한다.

나. 사퇴등의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 : 별지 제42호서식의(나)에 따라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. 이 경우 법 제154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(나)에 준하여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.

2.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하는 투표용지

가. 사퇴등의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인 때 : 제1호가목과 같이 인쇄한다.

나. 사퇴등의 시기가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인 때 :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해당 읍·면·동을 선거구역에 포함하는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(나)에 따라 사전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.

⑧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. 다만,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19., 2019. 5. 30.>

⑨ 중앙위원회가 제8항 단서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도를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·시·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, 관할구·시·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04. 3. 12., 2005. 8. 4., 2018. 1. 19., 2019. 5. 30.>

⑩ 법 제150조제5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무소속후보자 또는 추천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방법은 법 제150조제6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”는 “후보자”로 본다. <신설 2010. 1. 25., 2019. 5. 30.>

제73조(정당추천위원의 참여·입회) ①법 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·시·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·면·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·시·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·면·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.

②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·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

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.

③구·시·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(나)에 의한 투표용지작성·관리 기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·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5. 8. 4.]

제82조(투표의 계속진행) ①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)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. <개정 2005. 8. 4.>

②법 제157조제1항에서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”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·장애인등록증·외국인등록증·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·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. <신설 1998. 4. 30., 2002. 10. 28., 2004. 3. 12., 2005. 8. 4., 2009. 2. 19., 2015. 8. 13., 2023. 7. 31.>

③제1항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14. 1. 17.>

제83조(투표용지의 봉인·보관 등) 읍·면·동위원회는 구·시·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**투표용지의 매수·청인날인·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**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·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5. 8. 4.]

제84조(투표용지에의 날인) ①거소투표용지의 “**투표관리관**”칸에는 구·시·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. 이 경우 그 도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(나)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하되, 구·시·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8. 4., 2014. 1. 17.>

②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**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**을 별지 제50호서식의(가)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,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8. 4., 2014. 1. 17.>

③ 구·시·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. 17.>

**** 법률 제158조(사전투표) 제3항은 반드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다. ‘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’이라는 오프라인 증거자료 하나를 없애버렸다. 무슨 근거로? 무슨 수권으로?**

③ **사전투표관리관은**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“사전투표관리관”칸에 **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**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.

**** 규칙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. 그런데, 위반하고 있다.**

④제2항의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. <개정 2014. 1. 17.>

제86조(사전투표) ① 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법 제15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,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,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8. 13., 2023. 12. 15.>

**** ‘선거인 명부’에 해당하는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지도 않았고, 게다가 온라인 증거자료도 30일 뒤에 없앤다.**

③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·시·군위원회의 관할구역(하나의 구·시·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5. 8. 13., 2015. 12. 24.>

④ 사전투표관리관은 **전기통신 장애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**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.>

**** 전산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.**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**통합선거인**

명부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 및 투표마감시각 까지 도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, 그 명단(이하 이 조에서 “잠정투표자명부”라 한다)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(이하 이 조에서 “잠정투표”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8. 13.>

**** 전산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.**

⑥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게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중인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,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인 때에는 관할 읍·면·동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잠정투표자명부를 인계 받아 전송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.>

**** 전산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.**

⑦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,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 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선거인인 때에는 회수한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,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그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. <개정 2015. 8. 13., 2017. 1. 23.>

⑧ 삭제 <2021. 10. 22.>

⑨ 법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에 인계하는 경우 사전투표함의 봉쇄·봉인 및 송부에 관하여는 제92조의2 및 제94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미리 지정한 사전투표 사무원이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2. 13., 2015. 8. 13., 2021. 10. 22.>

⑩ 법 제158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투표지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기간 첫째 날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사전투표함의 투입구에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고, 둘째 날 해당 사전투표함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투표개시 전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봉합·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봉인지를 떼어내어 사용한다. <신설 2014. 2. 13., 2015. 8. 13.>

**** 봉인된 사전투표함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없다.**

⑪ 사전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(가)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<개정 2014. 2. 13., 2015. 8. 13., 2018. 1. 19.>

****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전투표록 하나로 모든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대체한다는 규정이다. 즉, 1. 선거인 명부, 2. 투표관리인의 사인, 3. 일련번호지라는 3종의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없애는 근거로 이 규정이 원용될 것이다.**

⑫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, 장비 등을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.
<개정 2014. 2. 13., 2015. 8. 13.>

[전문개정 2014. 1. 17.]

제94조(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) ① 투표관리관은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투표가 끝난 후 **투표함 및 그 열쇠,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**를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**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**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.

**** 당일 투표의 오프라인 증거자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. 1. 투표록, 2. 선거인 명부, 3. 일련번호지, 그리고 잠재적으로 4. 투표용지에 날인된 투표관리인의 사인이다.**

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 제170조제2항에 따른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별로 1인씩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,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.

[전문개정 2012. 6. 25.]

**** 결론적으로, 사전투표는 1. 선거인 명부, 2. 투표관리인의 사인, 3. 일련번호지라는 3종의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모두 없애버린 셈이 됐다.**

사전투표를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오프라인 증거자료는 없는 상태가 됐다.